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 - 45
------------	---------

제출년월일 : 2019. 4.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방재활동 중 발생한 지역자율방재단원의 피해(부상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 개정

### 2. 주요내용

- 가. 방재단 운영비, 활동 물품, 방재장비의 구입 및 임차 등 방재단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지원근거 보완(안 제9조제8항)
- 나. 방재활동중 발생한 자율방재단원의 재해보상 규정 신설(안 제17조)
  - 재해보상금의 청구 방법 등
  - 재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및 구성 등
  - 재해보상금의 유족 순위 및 재해보상금의 환수 등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 4.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19. 3. 14. ~ 2019. 4. 3. (의견제출 없음)

- 나. 자치법규 부폐영향 자율평가 : 원안 동의
- 다.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 해당 없음
-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9.4.16.)
-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항제1호 중 “식대, 여비, 유류대”를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운영비 등 그 밖에”를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 기타”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해보상)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단원 또는 유족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③ 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재해보상 청구시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안전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난관리총괄부서장, 기획예산과장, 복지행정과장, 의약과장, 재해보상 청구 단원의 거주지 관할 동장, 권역별 선임동장을 위원으로 한다.

④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서 제1003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⑥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 요양 [ ] , 장해 [ ] , 장제 [ ] , 유족 [ ]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 3. 구급 [ ] 4. 기타 [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재난관리총괄과장 귀하

제출서류	<p>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p> <p>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p> <p>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p> <p>② 장해증명서류 1부.</p> <p>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p> <p>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p> <p>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p> <p>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p> <p>⑦ 통장사본 1부.</p> <p>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p>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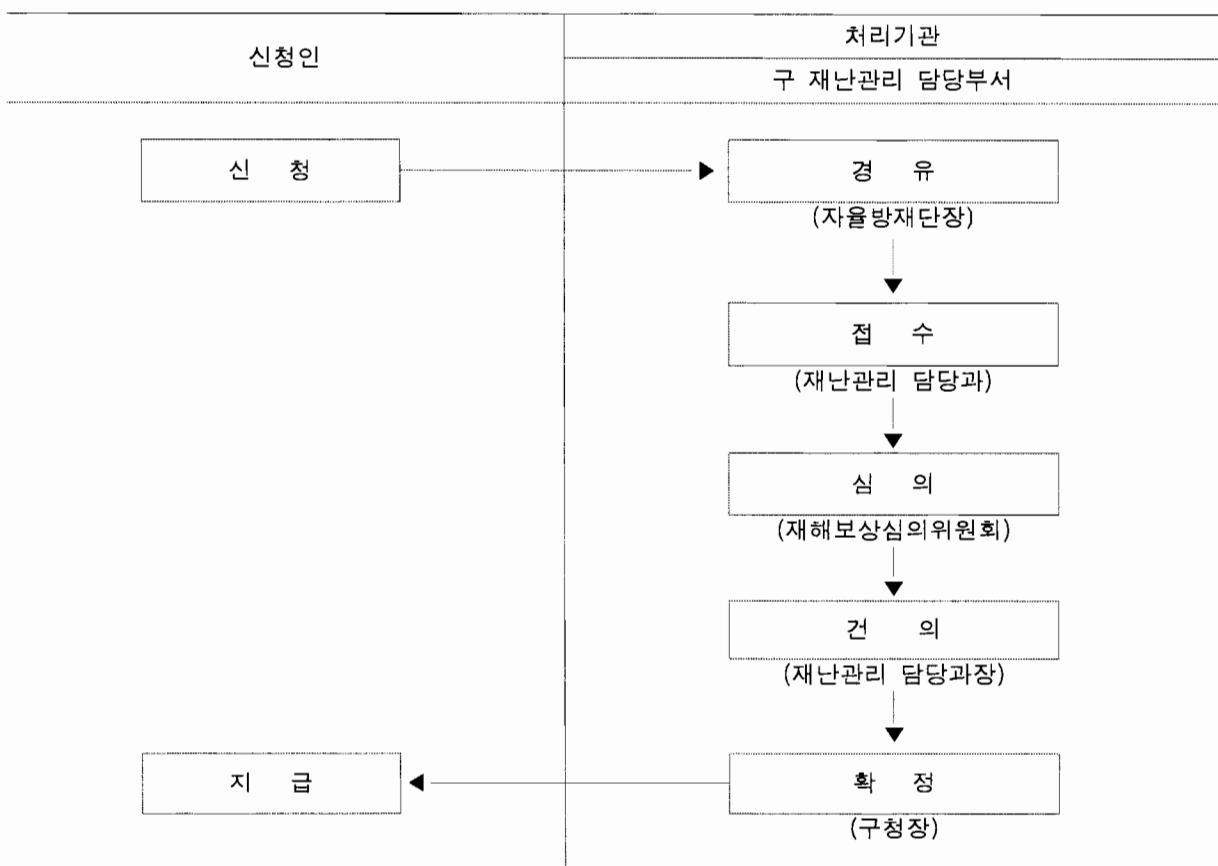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운영 등) ① ~ ⑦ (생 략)  ⑧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u>식대, 여비, 유류대</u> 등 필수 경비  2. ~ 6. (생 략)  7. 사무실 <u>운영비</u>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⑨ (생 략)  <u>&lt;신 설&gt;</u>	제9조(운영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1. ----- ----- <u>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u> --  2. ~ 6. (현행과 같음)  7. ---- <u>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 기타</u> ----- -  ⑨ (현행과 같음)
	제17조(재해보상)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단원 또는 유족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  
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  
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재해보상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③ 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재해보  
상 청구시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안전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난관리총괄부  
서장, 기획예산과장, 복지행정과  
장, 의약과장, 재해보상 청구 단원  
의 거주지 관할 동장, 권역별 선임  
동장을 위원으로 한다.

④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  
위는 「민법」 제1000조에서 제100  
3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에 같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⑥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 제6호서식>

## <신 설>

### [별지 제7호서식]

**요양 [ ] , 장해 [ ] , 장제 [ ] , 유족 [ ] 보상청구서**

\* 위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신고경우 후 제출서류 보합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 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 3. 구급 [ ] 4. 기타 [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성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성명 또는 인)

재난관리총괄과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①,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수수료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접수부원 확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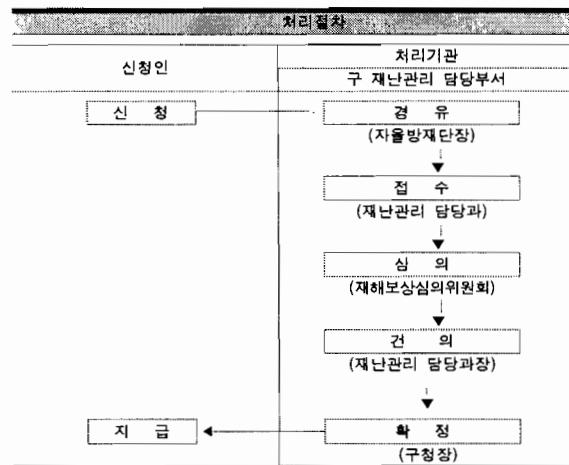
요양 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17조(재해보상) ①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단원 또는 유족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7조의3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재해보상 비용은 피해발생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피해의 유형과 피해규모, 범위 등에 따라 비용 규모가 유동적임으로 비용추계는 기술적으로 어려움.
- 따라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피해 발생에 따라 예비비, 기금 등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안전행정국 총무과 임종문
연락처	02-3153-8242